

- 단시간근로자(전문인력/꿈터장) -
**아이사랑꿈터 중구 3호점 육아기근로시간단축대체인력
공개 경쟁 채용 공고(3회)**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아이사랑꿈터 중구 3호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전문인력/꿈터장)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 모집 분야 및 직무

고용형태	직위	담당업무	인원	소속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전문인력/꿈터장)	○ 아이사랑꿈터 운영 총괄 - 연간운영 계획, 예산운용 - 회계, 업무, 직원, 회원 관리 - 실적보고 및 홍보 -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등	1명	아이사 랑꿈터 중구 3호점

○ 기관 사정에 의해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조정 및 종료, 퇴직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제한됨

○ 아이사랑꿈터 중구 3호점은 인천광역시 해당 군·구로부터 위탁받아 인천여성가족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운영 여건에 따라 사업의 종료, 위탁계약 해지 및 수탁기관의 변경으로 고용이 종료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비고
근무지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80 (중산동, kcc스위첸아파트 관리동 1층)	시설규모(m ²) 약 143
근무시간	화~토 15:30~18:30 (일 3시간)	주 15시간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최초 3개월) ※ 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조정 및 종료, 퇴직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 2026. 2. 20.(금)
보수	○ 기본급(세전) : 상한 월 1,074,720원 하한 월 823,000원 ○ 수당(세전) : 정액급식비 월 52,920원 관리업무수당 월 37,800원 명절휴가비 (연2회, 기본급의 60%)	지침 변경 시, 해당 연도「아이사 랑꿈터 설치·운영 지침」보수 기준의 소정근로시간 비 례 적용
복리후생	연차유급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성별 및 지역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공고일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
 -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근거: 재단 「인사규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직무자격 요건(개별사항)

직위	직무자격 기준
전문인력 (꿈터장)	<p>□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p>※ 경력 요건 : 보육교사 1급 이상,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에 한해 인정</p>

○ 우대요건(가점사항)

- 위 직무자격 요건 충족자로, 다음 조건을 추가로 갖춘 사람 우대

구분	적용 대상	증빙 서류	해당전형	가산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팀원) 자격기준 해당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 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면접전형	5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 급수만 다른 동일 자격증 미적용	자격증명서		5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경력증명서		5점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이수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 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자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5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5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거나 1 년 이상 중단한 여성중에서 취 업을 희망하는 여성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5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5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5~10 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 기준, 자격이 유효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식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증빙서류 미제출, 유효하지 않은 서류,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 등 제출 시 가점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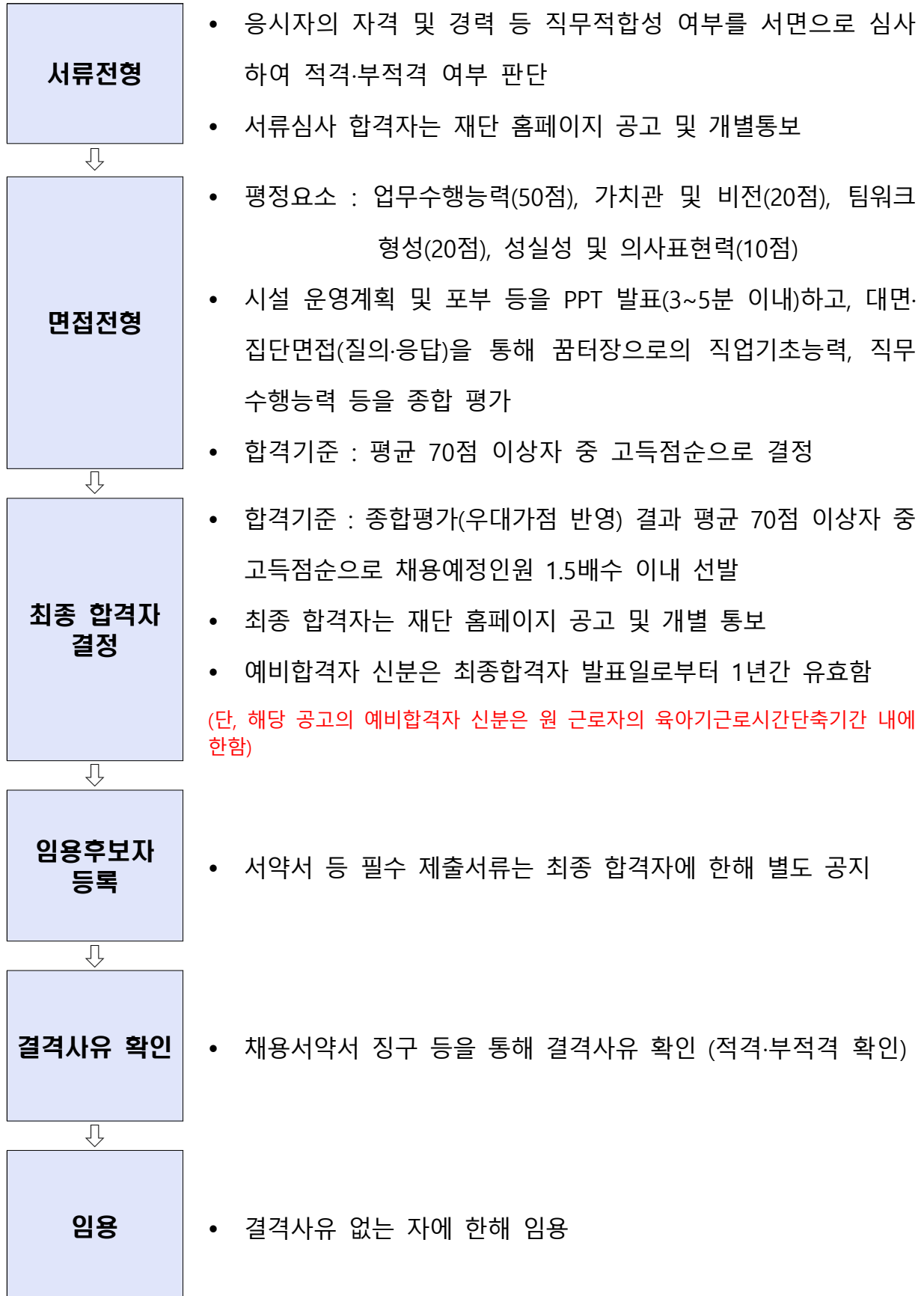
○ 자격증 및 이수증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건에 한하여 인정

○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시험의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4. 전형 절차 및 심사 방법



5. 전형 일정

전형 일정	일 시	비고
응시원서 접수	'25. 12. 24.(수)~ '26. 1. 8.(목) 18:00까지 (5일간/주말·공휴일 제외)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3층 306-1호 아이사랑꿈 터 운영지원단
		접 수 방 법
		· 방문 접수(9:00~12:00, 13:00~18:00) 또는 등기우편 · 2026. 1. 8.(목)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 일반우편 접수 불가
		응시원서 작성
· 양식 내려받기 : 재단 홈페이지 알림/참여마당 채용공고 게시판 · 재단 응시원서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 · 응시원서 양식 수정 금지		
서류심사	'26. 1. 15.(목) 예정	·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1. 16.(금) 예정	·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심사	'26. 1. 22.(목) 예정	· 3~5분 이내 PPT 발표 및 대면·집단 면접 · 인천여성가족재단 내 장소에서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6. 1. 23.(금) 예정	·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임용 예정일	'26. 2. 20.(금)	·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꿈터 출근

☞ 상기 일정은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재단 홈페이지(www.ifwf.or.kr) 안내 예정

6. 제출서류

제출 서류	필수여부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
2. 자기소개서(별지 2호 서식)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3호 서식)	○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4호 서식)	○
5. 아이사랑꿈터 운영계획서(별지 5호 서식)	○
6. 자격증명서(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7.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건) *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인정 불가	○
8. 가점사항 대상자 증빙 서류(공고일 이후 발행 건, 해당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자격기준 해당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 관련사업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아이돌보미교육 이수자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보수교육) 이수증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경력단절여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피보험자용) ※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응시원서에 기재되는 자격사항, 경력사항,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7.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일이 같거나 1일이라도 접수일이 중복되는 채용 건 일 경우 1인 1개 채용분야만 지원가능 합니다.(복수/중복지원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 내용 불명확 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은 년월일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와 경력(재직)증명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력(재직) 증명서를 기준

으로 경력을 인정합니다.

-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의 경력사항에 별도로 작성(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표기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과 해당분야 실무경력(직급(위),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의 근무기간 종료일 란에는 공고일자를 기재하거나, 공고일 이후로 재직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구비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해 최근 6개월 초과 경력증명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또는 기재 사항이 미비하여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고내용(응시인원, 응시자격, 채용일정 등)은 재단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응시자 미달(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2배수에 미달한 경우)에 따른 공고는 취소 또는 재공고될 수 있으며, 재공고시 응시자격을 포함한 최초 공고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1배수 이하일 경우, 2차 재공고부터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아도 응시인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면접 시 답변내용 포함)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출신지(주소),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혹은 결격사유로 인한 최종합격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로 임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에 의거 최종 합격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후부터 180일 이내에 응시관련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경과 시에는 반환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 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미확인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합니다.(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 예비합격자는 최종 심사단계에서만 운영
 - 채용예정인원의 1.5 배수의 인원 선정
 - 기준 점수 미달 시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유무는 최종결과 발표 시 함께 공고
 - 예비합격자 자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 * 해당 공고는 원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내에 한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및 직무 관련: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 032-517-5174)

자 기 소 개 서

.....

.....

.....

.....

.....

.....

-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 지원 분야 관련 본인역량, 경험, 직무상황 대처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재
-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 자: (서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아 이 사 랑 꿈 터 운 영 계 획 서

.....
.....
.....
.....
.....
.....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